

영국판례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기사의 1 인칭 화법은 작자오인이 되고 위법하다

MOORE v. NEWS OF THE WORLD LTD., AND ANOTHER

1972, IQ. B 441

<사건개요>

에드나 메이 무어 (Edna May Moore)는 유명한 여자가수로서 예명이 도로시 스콰이어스(Dorothy Squires)이다. 그녀의 남편인 로저 무어(Roger Moore)는 TV 배우로서 명성을 얻었는데, 예명이 The Saint(역주; 그 후 James Bond)이다. 그들은 1953년에 결혼하여 7년 정도 행복하게 살았으나, 1961년에 별거하게 된다. 남편은 딴 여자와 살림을 차리게 되고, 몇 년 후 도로시는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1969년 2월경에 완전이혼판결(decree absolute)을 얻게 된다. 도로시는 가수활동을 계속하기 위하여 1969년 4월 초순경에 「Dorothy Squires Promotions Ltd」를 만들고 「스테이지」라는 잡지에 노래광고도 내곤 하였다. 그 광고에는 「너무 늦게 핀 그대의 꽃」(Your flowers arrived too late)이 인기를 끌고 있었다. 한편 그 당시 그녀는 런던의 한 법정에서 서게 된다.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는 죄목이 있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때마침 그녀의 남편이 딴 여자와 재혼하게 되어 그때로서는 좋은 뉴스거리가 되었다. 1969년 4월 17일 전국지 일요신문인 「News of the World」지의 쇼란 담당 웨스턴 테일러(Weston Taylor) 기자가 도로시에게 전화로 인터뷰를 신청하였다. 그녀는 자신의 가요계컴백을 기사화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오후 1시부터 인터뷰가 시작되어 4시까지 계속되었다. 그 사이 그녀는 테일러 기자에게 샌드위치, 치즈 그리고 차를 제공하였을 뿐이다. 기자는 속기로 노트를 한 다음 그날 밤으로 정리를 끝내고, 다음 날 금요일에 다시 도로시에게 전화로 몇 마디를 더 물어 보았다. 그리고는 기사를 주말 담당부 편집인에게 넘겨주었다. 기사의 헤드라인은 테일러 기자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부편집인이 뽑았다. 1969년 4월 20일 일요일 「News of the World」지 표지 헤드라인에는 『The Girl Who Lost The Saint. When Love Turns Sour By Dorothy Squires』라고 게재되고 다시 내용면에 들어가 10페이지에 헤드라인으로 『How My Love For

The Saint Went Sour By Dorothy Squires』라고 한 다음, 줄을 바꾸어 조그마한 자체로 『Talking to Weston Taylor』라 하고, 그 기사내용은 주로 그녀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기사의 원고는 도로시에게 사전에 검토할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그녀가 서명한 바도 없다. 그녀는 일요일 조간판의 기사를 보고서야 그 내용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그 기사의 맨 끝에는 『다음 주 계속, 나는 왜 Roger에게 자유를 주기로 결정하였는가?』라고 다음 주 속보를 알리고 있었다.

도로시는 기사가 불쾌하여 테일러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친구들이 온통 「이게 무슨 것이람! 꼴사납게」하면서 전화를 걸어오고 있다고 했다. 실제 친구들은 그녀가 돈을 받고 기삿거리를 제공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녀는 다시 테일러 기자에게 전화로 변호사를 만나겠다고 말하였다. 우선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와 동시에 다음 주 예고판 게재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었다. 그러나 가처분신청은 기각되었다. 그렇지만 신문사측에서는 다음 주 일간판에서는 그녀가 돈을 받고 기사내용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취지의 내용을 삽입해 주겠다고 하였다. 1969년 4월 27일 다음 일요일판에서 헤드라인은 『Why Dorothy Squires Set the Saint Free』라고 쓰고 다음 들에 더 작은 글자로 그녀는 쇼란 담당 기자인 웨스턴 데 일리와와의 인터뷰에서 기사내용을 제공하였는데 그 댓가로 금품을 제공받은 바는 없다고 해명하고 내용은 주로 이혼하게 된 경위, 상황 등을 주로 실었다.

도로시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신문사와 테일러 기자를 상대로 한 것으로서 내용은 명예훼손(libel)을 이유로 한 것과 1956년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한 것 두 가지 였는데, 1심에서 명예훼손으로 4,300 파운드, 저작권법 위반으로 100 파운드의 승소판결을 얻고, 이에 대하여 신문사측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되었다.

< 1 심법원에서의 주장과 판단 >

1 . Dorothy Squires 의 주장

1969년 4월 22일자 소상에서 첫째 1969년 4월 20일자 신문표지의 헤드라인과 10페이지 이하의 내용이 도로시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둘째 그 기사는 헤드라인에서 「by Dorothy Squires 라고」 함으로써 마치 도로시가 그 기사의 작자로 오인 받을 우려가 있는 바, 이는 신문사측이 작자를 오인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기사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삽입내지 부가 시켜서는 아니 되는 1956년 저작권법 제 43조의 실정범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후 1959년 5월 30일경 추가로 그 기사는 그녀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나아가 도로시가 상당한 금전을 받기 위하여 선세이셔널한 방법으로 남편과의 사생활을 공표하여 기사화한 무절조한 여자로 추측 받을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신문사측의 주장

첫째 기사는 도로시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말한 것을 사실대로 실었기 때문에 진실이고, 또 원고는 인터뷰의 공표를 동의 내지 묵인하였고, 둘째 copyright claim 에 대하여는 작자오인을 부인하면서, 선택적으로 도로시는 그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삽입되는 것을 동의하였고, 아니면 그녀가 기사화될 것을 잘 알면서 인터뷰에 응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에 묵시적으로 동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신문사의 통상적인 편집방법이라고 주장하였다.

3. 1 심법원의 판단

캔트레이(Cantley) 판사와 배심원들은 6일간의 변론을 거친 다음, 캔트레이(Cantley) 판사는 배심원들에게 그의 논점정리절차(summing up)에서 문제점은 도로시가 테일러 기자에게 그녀와 남편과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기사화하는데 동의하였느냐 여부에 있고 명예훼손과 저작권법위반은 별개의 주장이므로 별도로 평결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특히 작자오인문제에 대하여 캔트레이 판사는 신문사측에서는 『talking to Weston Taylor』를 앞세우고 도로시 측에서는 『by Dorothy Squires』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결국 일반 독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 것인가에 따라 배심 된 여러분들이 결정하길 바란다고 하였다. 배심원들은 평결에서 명예훼손으로 4300 파운드, 저작권법 위반에 대하여 100 파운드, 도합 4,4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였다.

<항소법원에서의 주장과 판단>

1. 신문사측의 항소이유

신문사측의 항소이유는 1 심법관의 배심원들에 대한 요약절차에 하자(misdirection)가 있다는 것이다. 즉 첫째 판사는 신문사측의 정당화사유가 되는 명예훼손법(Defamation Act 1952) 제 5 조의 법리(역주;기사의 내용이 대부분 진실이고 일부 중요하지 않는 부분이 진실이 아닌 경우, 진실 아닌 부분이 진실된 부분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를 배심원들에게 주지시켜야 하는 데 이를 하지 않음으로써 신문사측의 정당화 항변에 관하여 배심원들을 잘못 지시하였다. 둘째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문제는 배심원들의 권한사항이 아니므로 그들에게 맡겨서는 아니 되는데 그들에게 맡긴 법률상의 잘못을 범하였다. 저작권법은 영국이 1948년 「Brussels Copyright Convention(브루셀 저작권 협약)」에 뒤이어 제정하였다. 이로써 영국은 1957년 위 협약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위 법의 취지는 저술가, 작곡가, 예술가와 같은 전문적인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이 사건의 원고와 같이 저작자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일반인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법관은 저작권법 위반사항은 배심원들의 평결에 맡겨서는 아니된다. 또 원고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명예훼손 등의 주장에 의하여 배상 받게 되는 손해를 입증하여야 되는데, 이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니 결국 법관은 배심원들에게 40 실링의 명목상의 손해배상을 평결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저작권법 제 43 조 10 항 단서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이중배상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 도로시 측의 답변

저작권법 제 43 조 8 항은 「a person」이라고 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다 포함하고 있다. 누구나 편지를 쓴다는 등의 의미에서 저작자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저작하지 아니한 기사나 다른 저작물에 대하여 자기가 쓴 것으로 오인 받게 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법의 목적은 제 3 자가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도로시가 신문사의 업무를 알고 그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사용되는 것을 동의하였느냐에 있고, 따라서 법관이 이 문제를

배심원들에게 말긴 것은 옳다. 그리고 손해에 대하여 작자오인으로 인한 손해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그것으로 전보될 수 없으므로 100 파운드는 적절하다.

3. 항소법원의 판단

가. 재판장 Lord Denning M.R.의 견해

먼저 명예훼손문제에서, 신문사측은 도로시가 테일러 기자에게 얘기한 것을 기사화 하였으므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원고측은 기사의 90%정도는 자기가 얘기한 것이 아닌 픽션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1 심법관의 배심원들에 대한 요약절차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리고 정당화 항변에서 1 심법관이 명예훼손법 제 5 조를 배심원들에게 주지시키지 아니하였다는 주장도 1 심에서 신문사측이 위 법조를 주장한 바 없으므로, 1 심법관이 이를 언급하지 아니한 조치는 너무나 당연하고 새삼 항소심에서 주장할 것이 못 된다.

저작권법 위반 주장에 대하여 신문사측은 그 기사가 도로시에 의하여 쓰여진 것처럼 기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talking to Weston Taylor」를 추가함으로써 책임을 피하려고 하였다. 모든 기사를 일인칭화법으로 꾸며 그녀가 스스로 말하는 것처럼 꾸민 것은 틀림없다. 따라서 작자오인(false attribution)에 해당된다.

또 신문사측은 그것이 그들의 통상적인 편집방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변명이 되지 아니한다. 이런 방법은 개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작자오인이 되고 위법하다. 그리고 저작권법은 전문적인 저술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보호한다. 법조문에 「another person」이라고 하였지, 「another author」라고 하지는 아니하였다. 100 파운드의 손해배상이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에는 이 사건과 같이 작자오인으로 인한 그것이 전보되는 것이 통상이므로 후자로 인한 손해액은 추가로 극히 소액에 그칠 것이다. 그러나 1 심에서 배심원들이 100 파운드로 결정한데 있어 법관의 요약절차에 아무런 하자를 발견할 수 없다.

나. 판사 Megaw L.J.의 견해

이 사건 기사는 헤드라인에 『By Dorothy Squires』라고 하고, 뒤이어 좀 덜 분명한 자체로 『talking to Weston Taylor』라 했고 기사 그 자체는 우선 도로시가 1 인칭 (I)으로 얘기한 것처럼 인용부호를 사용하여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인용부호 없이 도로시가 제 3자로 언급되도록 하여 부연하고, 이런 방법이 계속하여 반복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사를 전체적으로 볼 때 저작권법 제 43 조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1 심법원에서 배심원들이 신문사측에 불리하게 평결한 이상,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없고 법관의 요약에도 아무런 잘못이 없다.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100 파운드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고, 단지명목상의 손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총체적으로 4,400 파운드를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명예훼손에 4,300 파운드, 저작권법 위반에 100 파운드로 나누었을 뿐이므로, 100 파운드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재판장의 견해에 동의한다.

다. 판사 Stephenson L.J.의 견해

기사의 게재에 도로시가 동의하였느냐의 문제에 대한 배심원들의 결정에 이르기까지 1 심법관의 요약절차에 사실상 및 법률상 아무런 잘못이 없다.

덧붙이고 싶은 것은 법원은 명예훼손소송에서 명예훼손법 제 5 조의 항변이나 저작권법 제 43 조 위반의 주장을 고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명예훼손법 제 5 조의 항변은 주장되지 않는 한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데 동의한다. 그리고 작자오인으로 인한 배상액은 추가적인 손해액을 인정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 사건은 그런 점에서 적절한 사건에 속한다.

항소기각, 소송비용은 신문사측 부담.